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마약류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제1조~제2조)
-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한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6조)
-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弊害)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마약류 중독자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타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홍보 사업
2.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
3.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
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사업비 발생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

→ (안 제6조)

2. 미 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사업비 1억원 미만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세출 (총사업비)	38,6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 작성자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심재봉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체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